

1.

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

연명의료결정법은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,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
2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.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– 문의 : 1855-0075

– 홈페이지 : www.LST.go.kr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필요한 준비물

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,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

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